

평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7. 2. 13 (화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7. 3. 2(금)

다. 상정일자 : 2007. 3. 6(화) 제136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
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7. 3. 6) 상정·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재무과장 김장래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별로 『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』를 제정 체납세입금 징수 등 지방세수증대에 이바지한 관련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, 자치단체간 포상금 지급기준과 절차에 차이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 대상자 선정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 포상금 지급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함 (안 제2조)
- 포상금 지급 기준을 규정함 (안 제3조)
- 포상금 지급한도를 1건당 30만원, 월지급액 100만원으로 정함. (안 제4조)
- 포상금 지급 공적 심사기구인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별도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5조)

-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에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.
(안 제9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이상진)

가.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『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』를 제정 체납세입금 징수 등 지방세수 증대에 이바지한 관련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

- 자치단체간 포상금 지급기준과 절차에 많은 차이가 있고, 도입취지에 맞지 않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
-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제도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체납세 징수의욕을 고취하고자 기존의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나. 주요 내용을 보면

-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명확하게 명시하였고(안 제2조)
- 기존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체납 연차별로 지급기준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지급한도를 정하였으며(안 제3조 내지 제4조)
- 세입포상금 공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체납액 징수에 공적심의를 객관화 하도록 규정하였고(안 제5조)
- 또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을 경우는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(안 제9조)

다. 검토의견

-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시 지급대상, 지급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이를 근거로 세입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게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

통하여 보다많은 세입증대 및 세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개선
사항으로

○ 검토결과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: 평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.

평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

제출년월일 : 2007. 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별로 「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」를 제정 체납세입금 징수 등 지방세수 증대에 이바지한 관련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, 자치단체간 포상금 지급기준과 절차에 차이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 대상자 선정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 포상금 지급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코자 함임

2. 주요내용

가.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함 (안 제2조)

-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
-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
-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

나. 포상금 지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(안 제3조)

-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를 징수한 경우 : 징수액의 100분의 1
-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를 징수한 경우 : 징수액의 100분의 3
-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을 징수한 경우 : 징수액의 100분의 5
- 제도개선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경우 : 1건당 20만원

다. 포상금 지급한도를 1건당 30만원, 월 지급액 100만원으로 정함. (안 제4조)

라. 포상금 지급 공적 심사기구인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별도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5조)

마.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에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. 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 조치 : 당초 예산 10,000천원 확보

다. 입법예고 : 2006. 11. 17. ~ 12. 7 실시결과, 의견제출 없음

평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평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급대상) ①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(별정직, 기능직, 임시직,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)
2.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
3.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

② 「지방세법시행령」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.

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평창군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·관허사업제한·「조세범처벌법」에 의한 고발, 그 밖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,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도 특별공적에 포함한다. 다만,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다.

제3조(지급기준)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.

1.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
2.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
3.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
4.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
5.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20만원. 다만, 「공무원 제안규정」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②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.

제4조(지급한도)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

1.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(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)
2.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

제5조(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) 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별도 설치하지 아니하고 「평창군포상조례」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.

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
2.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
3.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

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.

제6조(대장비치)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및 정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 및 처리할 수 있다.

제7조(지급신청)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의하여 매분기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매분기 종료 후 5일까지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
제8조(지급)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환수) ①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「지방세법시행령」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.

【별지 제1호 서식】

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

(제6조 관련)

(단위 : 원)

징수 년월 일	징수자		징수내역				체납자			징수 확인 (담당)	특별 공적 (사유)	포상금지급	
	직급	성명	년도 /기 분	과세 번호	세목	징수 액	주소	성명	주민 등록 번호			포상 금액	지급 일

297mm × 210mm(보존용지(2종) 70g/m²)

【별지 제2호 서식】

숨은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

(제6조 관련)

(단위 : 원)

납기	부과자 (제보자)		세목	구분	징수 액	납세의무자			징수 년월 일	징수 확인 (담당)	포상금지급	
	직급 (주소)	성명 (주민등록 번호)				주소	성명	주민 등록 번호			포상 금액	지급일

주) 구분 란에는 포상금지급 적용기준 조항 등을 기록

297mm × 210mm(보존용지(2종) 70g/m²)

【별지 제3호 서식】

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
(제7조 관련)

수 신 : 평창군수

참 조 : 재무과장

발 신 : ○○과장(읍·면장) (인)

(단위 : 전/원)

징수자			구분	징수내역			포상금 청구액	입금은행 및 계좌번호	비고
소속	직급	성명		세목	건수	징수액			

주) 구분 란에는 포상금지급 적용기준 조항 등을 기록
210mm × 297mm(보존용지(2종) 70g/m²)

【별지 제3호의1 서식】

숨은 세원발굴 포상금 지급신청서
(제7조 관련)

수 신 : 평창군수

참 조 : 재무과장

발 신 : ○○과장(읍·면장) (인)

(단위 : 건/원)

부과자(제보자)			구 분	징 수 내 역				포상금 청구액	입금은행 및 계좌번호	비 고
소 속	직급 (주소)	성 명		세목	납기	건수	징수액			

주) 구분 란에는 포상금지급 적용기준 조항 등을 기록
210mm × 297mm(보존용지(2종) 70g/m²)

【별지 제3호의2 서식】

제안 또는 제도개선 포상금 지급신청서
(제7조 관련)

수 신 : 평창군수

참 조 : 재무과장

발 신 : ○○과장(읍·면장) (인)

(단위 : 건/원)

제안자			제안기간	세목	제안내용	제안효과	포상금 청구액	입금은행 및 계좌번호	비고
소속	직급 (주소)	성명							

※ 세입증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

210mm × 297mm(보존용지(2종) 70g/m²)

관계법령 발췌서

■ 지방세법

제28조(채납처분)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.

1. ~ 2. (생략)

제40조(관허사업의 제한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.인가.면허 및 등록과 그 경신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에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~④(생략)

■ 지방세법 시행령

제29조(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)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.

1.~ 2. (생략)

3. 징수유예 : 고지한 지방세의 납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

4. (생략)

②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기간은 그 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안으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금액은 관할 시장.군수가 정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제 41조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요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안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,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과 금액은 관할 시장.군수가 정한다.

제39조(환부이자 계산)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이자율은 「국세기본법시행령」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 환금가산율의 이율로 한다.

■ 조세범 처벌법

제6조 【고발】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는 국세청장.지방국세청장.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. 다만, 제12조의2 제2호 또는 제15조의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.